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본전략의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2. 이행계획의 소요비용을 100분의 20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영기획실 정책기획관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자체평가서를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 해당년도 6월말까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계획 수립·변경 등에 따른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통보시기는 별표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검토 전에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1.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기본전략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2. 그 밖에 운영위원회 검토결과,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검토결과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

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평가 당시의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검토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분야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4. 향후 정책방향
5.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최근 2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년도 6월 말까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경영기획실장,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 복지국장, 도시교통본부장, 물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10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검토대상에 따라 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협

의하여 위촉한다.

- ③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소위원회는 소관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1. 위원회·운영위원회·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등의 기능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②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은 사무기구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민관협력의 증진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 2. 위원이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경우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제8조제1항 관련)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실천계획
3.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5. 「에너지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6.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7.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8.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습지보전실천계획
9.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토양보전계획
10.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12. 「주택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13.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16.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17. 「하천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18.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20.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2.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3.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24.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6. 「경관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
27.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8.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0.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
(다음 페이지에 계속)